

【붙임 2】

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(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)		
종류	신 청 자 의 자 격	해당여부
1	· 지방자치단체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	
2	·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	
3	· 「주택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	
4	·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	
5	·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	
6	·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	
7	·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	
8	·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	
9	·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	
10	·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. 「우정사업본부 직제」 제27조에 따른 우체국(이하 “우체국” 이라 한다),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	
11	·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
12	· 군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·면지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.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	
13	· 국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
14	·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	
15	·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(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)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	

※ 자격별 점수차이 없음

자 기 소 개 서

		연락처	일반전화 : 휴대전화 :
(사진) (30×38) (스캐너)	성 명	(한자)	생년월일
	주 소		직위 (근속년수) (법인의 경우)
	수상경력		(년 월)
학 력	- 00고등학교 00학과 - 00대학 00학과 - 대학 00학석사 - 대학 00학박사		
<경력> 최근 경력부터 기재			
기 간	직 급	경력사항	
<개인능력>			
○ 가족관계증명서	부		
○ 최종학력증명서	부	졸업증명서 제출	
○ 경력증명서	부	경력증명서 제출	
○ 자격증(IT, 기타)	부	자격증 제출	
○ 우체국 이용도	부	예금고객등급증명서, 보험가입증명서 제출	
○ 신체검사서	부	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건강진단서 아님) 제출	
○ 총괄국장 추천서	부	총괄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	

* 수탁희망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,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(위탁업무종사자)이 작성

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작성자 : (서명 또는 인)

< 자기소개서 > 성명 :

※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을 한 동기
-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제도 이해도
-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

<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> 성명 :

※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
-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
- 법령, 제도,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
-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

【붙임 5】

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(시행령 제7조 관련)

항목	세부 항목	배점	점수내역	비 고
위치적 여 건 (40)	가.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	10	3km 이상: 10 2.5km 이상 3km 미만: 8 2km 이상 2.5km 미만: 6 1.5km 이상 2km 미만: 4 1km 이상 1.5km 미만: 2 0.5km 이상 1km 미만: 1 0.5km 미만: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(대학교, 대형건물(연면적33천㎡이상)구내, 병원 등은 별도 평가하며 0.5km 미만시 1점)	지도상 직선 거리 (재선정시 0.5km 미만 중 0.45km 이상은 1점 부여) (측정오차 ±50m 인정)
	나. 신청장소 주변여건	10	복합지역(빌딩, 상가, 주거): 10 상가지역: 8 집단주거지역(5천 세대 이상): 6 빌딩구 내: 4 주거지역: 2	인근지역 종합판단
	다. 이용가능 인구수	10	45,000명 이상 : 10 40,000명 이상 45,000명 미만 : 9 35,000명 이상 40,000명 미만 : 8 30,000명 이상 35,000명 미만 : 7 25,000명 이상 30,000명 미만 : 6 20,000명 이상 25,000명 미만 : 5 15,000명 이상 20,000명 미만 : 4 10,000명 이상 15,000명 미만 : 3 5,000명 이상 10,000명 미만 : 2 5,000명 미만 : 1	최근통계 (인구+ 사업장종사원)
	라. 교통 여건	10	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: 2~4 ※ 설치장소(우편취급국)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, 50m이내 3점, 50m이상 2점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차의 편리성: 2~4 ※ 우체국 이용 주차공간 2대이상 4점, 1대 3점, 없음 2점 (단, 설치장소 건물 관리하의 주차공간에 한함) 위치식별의 용이성: 1~2 ※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취급국출입구가 보임 2점, 안보임 1점	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(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)
사무실 요 건 (30)	가. 이용 편의성	10	지상 1층: 10 지상 2층: 7 지하 1층: 4 지상 3층(승강기를 설치한 경우):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: 0	
	나.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	10	45㎡ 이상: 10 40㎡ 이상 45㎡ 미만: 8 35㎡ 이상 40㎡ 미만: 6 30㎡ 이상 35㎡ 미만: 4 25㎡ 이상 30㎡ 미만: 2 25㎡ 미만: 0	전용면적 (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하고, 전용면적 계산방법은 내법으로 한다)
	다. 건물의 소유 상태	10	본인 건물: 10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: 5	공동지분 계산 : 5점+5점*지분율 (소수점 둘째자리 절사)
업무 수행 능력(30)		30	우정사업 이해도, 동종·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, 고 객만족 서비스 능력,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, 성실성,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	
합 계		100		

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

1.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

* 점두간판 표기 예시 (“국명 ”은 작게, “우편취급국”은 크게)

2. 게시물 부착

- 필수게시물 : 업무위탁증서, 우편요금표, 창구이용 시간표, 우표 발행안내(건본우표),
 - 기타게시물 : 국정 홍보, 우정사업 홍보, 상품 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
- * 모든 게시물은 액자나 프레임을 활용하고, 액자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

3. 카운터, 고객 편의시설

- 카운터,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**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**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
- * **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: 85Cm**
-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,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

4. 공중실

-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/물품의 방치를 지양, 최소한의 업무 용도(우표접부, 소포 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)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
-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
 -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,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
- 공중실 공간은 이용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 이상 되도록 권장

5. 현업실 정리정돈

- 우편자루(트레이)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
-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 용품만 비치하고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 비치

6. 24시간 방범 보안체계 설치 : 무인경비시스템

* 단, 우편취급국과 수탁자의 주거가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우정청장이 설치장소의 환경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

※ 창구디자인 표준(안)

* 해당 총괄국에서 시안 확인 후 설치함